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36호 2014. 10. 2.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87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388호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조 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0월 2일

정선군 조례 제2387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허가 기타”를 “인·허가 등”으로, “등록확 인, 지정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등록확인, 지정 등”으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선군 제증명과 인·허가 등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중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별표 1및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준)”을 “(징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을 “별표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때”를 “2통 이상 신고, 신청이나 제출할 때”로, “수인”을 “여러 명”으로, “등록등을”을 “등록 등을”으로, “1 통 또는 1인”을 “1통 또는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가족 에”를 “가족에”

로,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명”으로, “1인”을 “1명”으로, “징수 한다.”를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증명등”을 각각 “제증명 등”으로, “2대이상”을 “2대 이상”으로, “신청하는”을 “신청할”로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을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신고서,입찰참가 및 수의계 약신청서,견적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를 “신고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서, 견적서에 첨부하게 하여”로, “제증명등”을 각각 “제증명 등”으로, “첨 부가 곤란한”을 “첨부가 곤란할”로 “하므로서”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등)”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7조제1항제2호 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그”로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 증명등”을 “등록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유·가족”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

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예비군중, 소대장”을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으로, “(공부부분)”을 “(공부부분을 포함한다)”로하고, “때에 는”을 “때에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을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로, “제증명등의 서 류여백”을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명>			
1. <삭제 2003. 6. 17>			
2. 병적에 관한 증명			
○ 병적증명	1통	200원	
3.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 <삭제 2003. 6. 17>			
○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4. <삭 제>			
5.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 영업주	1통	500원	
○ 중소기업자	1통	500원	
○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6. <삭 제>			
7. <삭 제>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 생산실적	1통	300원	
○ 수출실적	1통	300원	
○ 납품실적	1통	300원	
○ 건물사용	1통	300원	
○ 공장원료사용수요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지적관계 제외
○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	1통	300원	
- 확정소요량	1통	1,000원	
○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원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문서	1통	300원	
- 건물도면	1통	300원	
- 토지도면	1통	300원	
○ 공부 및 열람			
- 기본료	시간당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컬러출력	1필지	1,500원	
○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2,000원	
○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 채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원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12. 회계에 관한 증명			
○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원	
○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 면세용도물품 증명	1통	300원	
13. 자동차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 경력(운전, 무사고)증명	1통	500원	
14. 주택에 관한 증명			
○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표준주택설계도면	1건	1,500원	
15. 기타 제증명			
○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 화재증명원	1통	800원	
○ 소방시설완비 증명	1통	500원	
○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16. 채무불이행자 명부열람 증명			
○ 열람	1건	300원	초과1매당 100원추가
○ 등사	1건	300원	
○ 정본 및 등본	5장까지	300원	
	초과1장당	30원	
○ 초본	1건	300원	
○ 증명서	1건	300원	
17.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	6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신규 5,000원	
○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갱신 또는 기간 연장 3,000 원	
○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500원	
○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5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보건사회관계			
○ 치과기공소 의원	1건	30,000원	
○ 안경업소개설 등록	1건	20,000원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삭제<2009.12.30>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원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 삭제<2009.12.30>			
○ 묘지개장허가 신청	1건	500원	
○ 시체운반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 삭제<2009.12.30>			
○ 삭제<2009.12.30>			
○ 삭제<2009.12.30>			
○ 삭제<2009.12.30>			
○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신고	1건	25,000원	
○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변경신고	1건	13,000원	
○ 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신고	1건	20,000원	
○ 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변경신고	1건	10,000원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탕업)신고	1건	45,000원	
○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탕업)변경신고	1건	23,000원	
○ 이.미용업, 세탁업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이.미용업, 세탁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 기타 신고영업(세척제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장난감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 기타 신고영업(세척제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장난감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15,000원	
○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건	신규허가와 동일	
○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1건	500원	
○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	1건	2,300원	
○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재발급	1건	2,000원	
○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사실증명서발급	1건	500원	
○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 약국 재개업 신고	1건	1,000원	
○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1건	500원	
○ 의례식 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	1건	500원	
○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원	
○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1건	800원	
3. 농수산 관계			
○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5,000원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1,000원	
4. 산업자원 관계			
○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 주유소	1건	20,000원	
-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 전기공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5,000원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산림관계			
○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500원	
○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6. 건설관계			
○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원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1,000원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 및 보상비 제외
○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000원	
○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원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하의 배	1건	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1건	9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1건	1,3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건	2,1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500원	
○ 공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1건	500원	
○ 채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500원	
7. 관광문화관계			
○ 출판사, 인쇄소 등록	1건	6,000원	
○ 출판사, 인쇄소등록사항 변경	1건	5,000원	
○ 유통관련업등록, 변경등록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건	30,000원	
-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	1건	30,000원	
- 노래연습장업	1건	30,000원	
- 복합유통제공업	1건	30,000원	
○ 유통관련업신고, 변경신고			
-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	1건	30,000원	
○ 공연장등록	1건	60,000원	
○ 공연장변경등록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개정 2010.12.15>	1건	30,000원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 허 가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허가 및 신고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건	30,000원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변경신고)	1건	30,000원	
8. <삭 제>			
9. 각종 제증명 발급시 도면이 첨부될 경우	1건	400원	
10. 회계관계 <신설 1998. 12. 10>			
○ <삭제 2007. 2. 15>			
○ <삭제 2010.12.15>			
11. 부동산중개업 관계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개설 신청	1건	10,000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5]

고무인
(제7조 관련)

↑
1.5c
m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11cm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u>인허가</u> <u>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u> <u>록확 인, 지정등(이하 “제증명</u> <u>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u> <u>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인·허가 등 --</u> ----- <u>등록확인, 지정</u> <u>등-----</u> ----- <u>수수료 징수에 필요한</u> <u>사항을 정함을 -----</u> -.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제증명 과 인·허가 등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지정 등(이 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 징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 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u>별표 1</u> 및 <u>별표 3과 같다.</u>	제3조(요율) ----- 제증 명 등 ----- <u>별표 1과 같</u> <u>다.</u>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u>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u> <u>(제출) 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u>	제4조(징수기준)① <u>별표 1에 따른</u> <u>제증명 등-----</u> <u>2통 이상 신고, 신청이나 제출</u> <u>할 때 ----여러 명-----</u>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정선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 약신청서, 견적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등록 등을 -----
----- 1통 또는 1명-----
----- . -----
----- 가족에 -----
---- 제증명 등-----.

② 여러 명-----

--- 1명----- 징수한다.

③ ----- 제증명 등--
----- 2대 이상-----
---신청할-----

----- 여
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
-----.

제5조(징수방법) ① -----

-- 신고서, 입찰참가 및 수의계 약신청서, 견적서에 첨부하게 하여----- . ---- 제증명 등----- 첩

사전 첨 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 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
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 증명등

부가 곤란할----- 제 증명 등----- 하여-----
--.

② -----
----- 제 증명 등-----
-----별표 1에 따른-----
-----.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 ② 지역예비군중, 소대장과 읍·면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분)열람을 하는 때에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그 -----등록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사람
-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공부부분을 포함한다)-때에 는-----
-.
- ③ -----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 제증명 등의 서류

서 류여백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여백-----
-.

개 정 이 유

- 기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조항이기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수수료의 반환(안 제6조)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
 -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10월 2일

정선군 조례 제2388호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계획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효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군기본계획은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할 경우 해당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에 따라 정선군 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 지역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 제안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 군계획시설 · 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정선군 군계획시설(이 조례에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1.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의3에 따른 관리비용·관리방법
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3.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공작물(지상에 설치하는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 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times$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times$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div$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times$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16조(위임규정)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영 제53조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군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관하여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및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0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 또는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1헥타르마다 평균입목축적도가 군의 해당 평균입목축적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그 산정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1등급과 같은 대상지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를 다음 각 목에 따른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

가.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나.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다.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것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제14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및 마을 등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포장하여 개설된 현행도로 및 그 밖의 사실상의 현행도로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포장된 현행도로

나.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제방도로 및 구거부지

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 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찰쌓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수질·토지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및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
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현황과 상이하게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택지식 분할을 못하여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2년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 행위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9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최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

2. 위원: 군수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서기: 해당 업무담당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부령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할 경우 그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1절 용도지역 건축제한

제31조(건축제한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

② 영 별표 20 제2호 및 영 별표 27 제2호 단서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6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제3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제한에 따른다.

제2절 경관지구 건축제한

제33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층수의 1.5배(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백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절 미관지구 건축제한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한정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결하

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블라드 또는 돌의자 설치
2. 조경 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관계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심지미관지구: 9미터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9미터 이하. 다만,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3. 일반미관지구: 6미터 이상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군수는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그 밖의 지구 건축제한

제4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다만, 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다만,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른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

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중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건설 허용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 구역(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150퍼센트 이하
6.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가.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 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55조(용적률의 완화 및 특례)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배출 수준은 별표 20 제9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및 군계획상임기획단

제1절 군계획위원회

제57조(설치 및 기능) 군수가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이하 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관리계획과 관련있는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관리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참석시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⑥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자문·심의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 ⑤ 분과위원장은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분장한 업무 또는 분과위원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63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른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공동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공동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해야 한다.
-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공동위원회, 공동위원 및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및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자를 포함한다)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리 그 동의를 얻어 관련자를 참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5조(군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 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군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법 제1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0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68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9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기획단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70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7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필요사항(제20조제1항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 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
1. 자연녹지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례 별표 16 제10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한정한다)	50미터 이내	1만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의 진입 도로 : 너비 6미터 이상
2. 계획관리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20 제1호 자목, 차목 및 조례 별표 19 제17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에 한정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파목·하목 및 너목에 한정한다)	50미터 이내	3만제곱 미터 이상	
3. 농림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0미터 이내	3만제곱 미터 이상	

[별표 2]

경사도 산정방식(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1. 실측으로 산출하는 경우

- 가. 경사도는 현황 측량도면을 바탕으로 한다.
- 나.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출한다.
- 다. 측량점은 변곡점 및 경사가 급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포함한다.
- 라. 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경우

- 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 나. 10m×10m 격자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출한다.
- 다. 수치전산파일의 등고선 단위나 수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경우 2.5m 간격의 간곡선 또는 1.25m 간격의 조곡선을 추가할 수 있다.
- 라. 경사도의 산출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경우 사용프로그램, 좌표범위, 분석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마. 수치전산파일 작성 고시일 이후 현지의 지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형의 평균 경사도는 실측으로 산출한다.

[별표 3]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과 지역 아동 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호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3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별표 8]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을 제외한다)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7호 관련)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8호 관련)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9호 관련)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2]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0호 관련)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3]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1호 관련)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2호 관련)

(영 별표 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3호 관련)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6]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4호 관련)

(영 별표 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5호 관련)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

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
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
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 19]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7호 관련)

(영 별표 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체과점 을 제외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8호 관련)

(영 별표 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1]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19호 관련)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6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2]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별표 24]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2호 관련)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별표 25]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23호 관련)

(영 별표 2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별표 26에서 정하는 지역 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2. 별표 18 제9호 및 별표 19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 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31조제2항 관련)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부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견서(제29조제3항 관련)

담당자	업무담당	위원장

접수번호		처리기간	. . .	
민원명				
개최일시	. . .		개최장소	
민원인	주소		성명	
신청현황	대지위치			
	공부면적		용도지역	
	신청면적		신청목적	
관련부서 심의사항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합니다.

소속	직	성명	관련법령	심의의견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서명
종합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제65조제2항 관련)

본인은 법령 및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등에 관하여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권개입·알선·청탁·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나는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투명한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4.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20 . .

정선군계획위원회 위원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개 정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4. 1. 17.)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으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에 따른 공고기간 개정(안 제5조)
 -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당초 7일에서 14일로 공고기간 연장
-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구체화(안 제6조제4항)
 -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된 주민제안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개정(안 제9조)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신설(안 제29조)
-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제31조제1항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 별표 15, 별표 21)
-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신설(안 제46조)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내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안 제51조제1항)
 -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음.
-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2조제4항)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은 60퍼센트 이하로 건축 가능.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신설(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은 15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이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군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 및 민간위원 선정방식 신설(안 제58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민간위원 선정은 공모 및 외부추천 방식을 병행 가능

-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규정 신설(안 제61조제2항)
-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안 제63조)
- 군계획사항 대외 누설금지 및 청렴성 강화규정 신설(안 제65조)
-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시점 개정(안 제66조제2항)
 - － 심의종결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공개
- 정선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규정 신설(안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